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충청북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 이상욱 의원 등 7인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 2021년 5월 31일
- 회부일자 : 2021년 6월 1일

3. 제안사유

- 2017년 소라넷 사건, 지난해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을 비롯해 딥페이크(DeepFake) 포르노 등 사람의 신체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촬영·편집된 ‘디지털 성착취물’이 웹하드, 다크웹, 디스코드 등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유포, 공유, 소지되는 등 성범죄 수법이 주도면밀해지고 조직적으로 확대·진화되어 가고 있음.
- 또한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과 인격권을 파괴하는 패륜적 행위로 인터넷의 익명성을 악용하여 동영상 등의 공유·유포로 인해 2차 피해의 파급력이 매우 크고, 길며 상대적으로 약자인 미성년자에게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어 시간적·공간적 피해 확산이 심각해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2020년 4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아동성착취물 등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처벌 범위 확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등 성폭력범죄의 법정형 상향, 불법 성적 촬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등의 관련 규정을 포함한 ‘n번방 방지법’이 통과됨에 따라 지자체

차원의 후속조치 마련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충북을 조성하고, 도민의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디지털성범죄 유형>

구분	유형	적용 법률
촬영물 이용 성폭력	불법 촬영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
	비동의 유포, 재유포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2항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3항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재유포)
	유통, 공유	- 정보통신망법 제42조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 -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 3 -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 - 전기통신사업법 제104조
	유포협박	- 형법 제30장 협박의 죄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 형법 명예훼손죄 제310조 - 형법 모욕죄 제311조

※자료 부산여성가족개발원, “부산지역 디지털성범죄 인식조사 및 대응방안”, 2020. 9. 재인용

4. 주요내용

- 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나. 디지털성범죄 관련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라. 디지털성범죄 방지와 도민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마.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5.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김주희)

가. 제출배경

- 대검찰청 「2020 범죄분석」 자료 중 성폭력범죄 유형별 발생건수 추이를 보면,
- ‘카메라등 이용촬영죄’의 경우, 2010년에는 1,153건으로 전체범죄 중 5.6%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2019년은 5,893건(18.4%)으로 지난 10년간 유형별 범죄 건수 중 가장 급격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 ‘통신매체이용음란’의 경우도 소폭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음.

<성폭력범죄 유형별 발생건수 추이(2010년~2019년)>

(단위: 건(%))

연도	강간 ⁹	강제추행	강간등 강간등 ¹⁰	강간 등 살인/치사	강간 등 상해/치사	특수강도 강간 등	카메라등 이용촬영	성적목적의 장소침입	통신매체 이용음란	공중밀집 장소추행	계
2010	4,384 (21.3)	7,314 (35.5)	3,234 (15.7)	9 (0.0)	1,573 (7.6)	293 (1.4)	1,153 (5.6)	-	1,031 (5.0)	1,593 (7.7)	20,584
2011	4,425 (20.0)	8,535 (38.5)	3,206 (14.5)	8 (0.0)	1,483 (6.7)	285 (1.3)	1,565 (7.1)	-	911 (4.1)	1,750 (7.9)	20,168
2012	4,349 (18.6)	10,949 (46.9)	1,937 (8.2)	13 (0.1)	1,208 (5.2)	209 (0.9)	2,462 (10.5)	-	917 (4.0)	1,332 (5.7)	22,376
2013	5,359 (18.4)	13,236 (45.5)	1,186 (4.0)	22 (0.1)	1,094 (3.8)	150 (0.5)	4,903 (16.9)	214 (0.7)	1,416 (4.9)	1,517 (5.2)	29,097
2014	5,092 (16.7)	12,849 (42.2)	624 (2.0)	8 (0.0)	872 (2.9)	123 (0.4)	6,735 (24.1)	470 (1.5)	1,254 (4.1)	1,838 (6.1)	29,863
2015	5,274 (17.0)	13,266 (42.7)	283 (0.9)	6 (0.0)	849 (2.7)	72 (0.2)	7,730 (24.9)	543 (1.7)	1,139 (3.7)	1,901 (6.1)	31,063
2016	5,412 (18.4)	14,339 (48.8)	192 (0.7)	8 (0.0)	736 (2.5)	56 (0.2)	5,249 (17.9)	477 (1.6)	1,115 (3.8)	1,773 (6.0)	29,357
2017	5,555 (16.9)	15,981 (48.7)	144 (0.4)	7 (0.0)	716 (2.2)	34 (0.1)	6,615 (20.2)	422 (1.3)	1,265 (3.9)	2,085 (6.4)	32,824
2018	5,826 (18.1)	15,672 (48.8)	182 (0.6)	8 (0.0)	655 (2.0)	43 (0.1)	6,085 (19.0)	646 (2.0)	1,378 (4.3)	1,609 (5.0)	32,104
2019	5,845 (18.2)	15,766 (49.2)	157 (0.5)	2 (0.0)	653 (2.0)	42 (0.1)	5,893 (18.4)	685 (2.1)	1,454 (4.5)	1,532 (4.8)	32,029

※자료: 2020범죄분석, 대검찰청(<https://www.spo.go.kr/site/spo/crimeAnalysis.do>)

-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여성가족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 중인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 센터에서 2018년 4월30일부터 2020년 9월30일까지 발생·처리한 디지털성범죄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음.

(‘18. 4. 30. ~ ‘20. 9. 30., 건수)

연도	지원건수(합계)	상담지원	삭제지원	수사법률지원연계	의료지원연계
2018	33,921	4,787	28,879	203	52
2019	101,378	5,735	95,083	500	60
2020	100,468	7,706	92,347	376	36

※자료: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0년 디지털성범죄 대응의 성과와 과제”, 제4차 정책토론회 자료집, 2020.11.25.

- 중복의 경우, 별도로 디지털성범죄를 전담하는 기관이 없어, 충북1366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중복의 경우도 100여건(2019년 1월부터 2020년 5월31일까지)의 디지털성범죄를 접수 처리하였고, 빈도가 많은 순서는 불법촬영 > 유포불안 > 몸캠 및 해킹 > 사이버 괴롭힘 및 성희롱 순으로 나타남.
- 2020년 4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아동성착취물 등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처벌 범위 확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등 성폭력범죄의 법정형 상향, 불법 성적 촬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등의 관련 규정을 포함한 ‘n번방 방지법’이 통과됨에 따라 지자체 차원의 후속조치 마련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며, 타 시·도의 경우, 대전, 경기, 세종, 전남 등이 관련 조례를 제정함.
- 이에 최근 급증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중복을 조성하기 위하여 디지털성범죄로 인한 피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도민의 성적(性的)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 보호 및 피해 회복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됨.

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2조(정의)**에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정의함.
 - 현행 법에서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별도 정의를 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를 ‘동의 없이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유포하거나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행위와 허위 영상물 편집·합성·가공 및 반포 등을 통해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등’으로 규정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안 제4조 및 제5조**는 도 차원의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대해 규정함.
 - 정보통신기술이라는 매체의 특수성을 지닌 디지털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보호·지원과 더불어 사전 예방 차원의 도민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 등이 중요한 만큼 이를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안 제6조 및 제7조**는 피해자 지원 사업과 교육 및 홍보사업에 대해 규정함.
 - 지원사업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해 피해신고 접수·상담, 피해자 의료, 수사시관·법원 동행 및 법률 지원, 치유회복 프로그램 제공, 영상 등 유포 및 살해 지원 현황 모니터링,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 중복의 경우, 현재 여성재단 1366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해 경찰 신고, 지원서비스 연계(상담소, 소송대리지원, 의료비 지원등), 유포차단(삭제요청); 방심위 심의신청, 피해자가 직접 삭제 요청, 민간단체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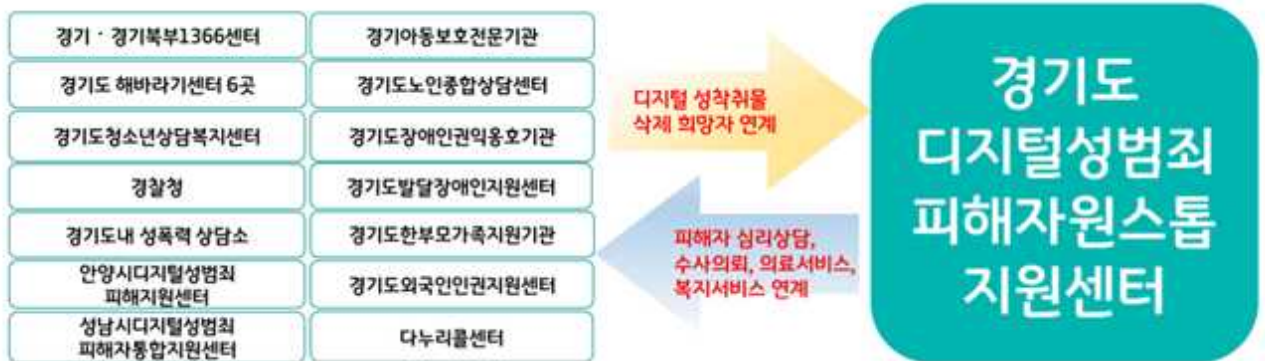
에 필요한 도움 요청·협조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교육사업의 경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및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9조(여성폭력 예방교육) 등에 따른 교육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교육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할 필요성이 있는 바, 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였고, 예방, 신고 및 피해지원을 위한 홍보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 문제가 없음.

○ 안 제8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부산시의 경우 1366에서 디지털성폭력에 대한 상담지원, 삭제지원, 수사지원, 법률지원, 기타(의료, 심리치유, 효과적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등 추진 중이며,
- 경기도는 여성가족재단 내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2명)를 설치하고,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 중임.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유관기관 협력체계>



○ 이에 충북에서도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시·군, 도교육청, 도경찰청, 의료기관 및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한 것으로 타당함.

다. 종합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동의 없이 사진이나 영상(디지털 성착취물)을 촬영·편집·합성 또는 가공하거나 유포하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디지털성범죄에 대하여 명확히 정의하고, 디지털 성착취물의 유포·확산 방지 및 피해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충북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디지털성범죄는 익명성에 숨어 악랄하게 피해자의 ‘성(性)’을 착취하며 정보통신망으로 인해 그 피해가 2차, 3차로 확산될 수 있음.
 - 즉 범죄형태가 기존의 성범죄와 유형을 달리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특히 성착취 구조에 취약한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의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고 예방 및 안전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 경찰청, 의료기관 등과 같은 유관 기관과의 협력 체계 마련이 매우 중요할 것임.